



2022년도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 (Group 1)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석면피해의심지역(석면공장,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 (수리)조선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 관련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일정을 참조하여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검진 대상

- 조선소·수리조선소 반경 2km 이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및 타업종 종사자
※ 주요지역: 용현면,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향촌동, 남양동 일대
-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 10년 이상 거주자
※ 주요지역: 사천시 전 지역
- 과거 석면 노출 취약 업종 종사자 및 가족
※ 건축·건설업(슬레이트 시공·철거, 건물철거·수리업), 선박건조·수리업, 보일러·배관작업, 자동차 정비업 등
- 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참여 희망자(단, 현재 경남 거주자)

검사 항목

- 기본(1차) 검진 - 의사진찰, 흉부 X-ray, 설문조사
- 정밀(2차) 검진 - 의사진찰, 흉부 CT, 폐기능검사 ※ 기본검진 결과 석면질병 의심 소견이면 정밀검진 실시

검진 일시 및 장소

검진 일자	검진 장소	검진 시간
6월 25일(토)	향촌동 행정복지센터 (향촌5길 28)	오전 10시~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오후 1시)
6월 26일(일)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무산로 21)	

안내 사항

- 1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검진이 가능합니다.
- 2 오전(10시~11시)에 많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오후에 오시길 바랍니다.
- 3 정밀검진 결과 석면질병으로 진단되면 '환경성 석면피해인정' 또는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4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지 포함)을 소지하시면 보다 빠른 검진이 가능합니다.
- 5 위 일정은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6 자세한 사항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055-360-3770~2)로 연락주세요.

석면피해구제제도 안내

석면피해구제제도란?

- 석면은 발암물질 1군으로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킴.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피해자는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함.
- ☞ 이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함.

석면피해구제 대상자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자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병은?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석면노출로 인한 폐암 발생 위험도는 비 노출자의 5배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CT 영상판독에 의해 병형 및 폐기능 장애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0~20년): 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

석면피해구제 신청 절차

- 신청 대상자: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법 시행일 전·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신청절차: 관할 시·군·구청의 환경위생과 등 석면피해구제 담당자 방문 후 진행



- 처리기간: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결정(단,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구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 구제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구제급여 금액

구분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2022년 기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 부담금액 전액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	1,548,540원/월	
미만성 흉막비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	1,114,940원/월	
석면폐증		제1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	1,114,940원/월
		제2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	743,290원/월
제3급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	371,640원/월	유효기간(2년) 동안 지급	

※ 2022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60,085원/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 장의비: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 2022년 기준 2,924,290원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2022년 기준)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의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43,864,350원)	일시 지급	
미만성 흉막비후	장의비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 (21,932,170원)		
석면폐증	제1급		장의비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 (21,932,170원)
	제2급		장의비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14,621,450원)
	제3급		장의비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 (7,310,720원)

· 유족지급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가 해당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구제급여는 반드시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접수



☞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시 수시로,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 신청 필요